수 영 구

새수영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수 영 구 보

호외 제557호 2020. 5. 4.(월)

공 고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1

회람								

· 발행 : 수 영 구 · 편집 : 기획감사실 (610-4075)

수영구 공고 제2020-392호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0년 종합소득(확정신고)·양도소득(확정신고·예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을 통지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기한 연장

구분	방법	대상	세분류		연장기한	연장기간
신고기한	직권	특별재난지역 (대구, 경북 청도·경산·봉화)	종합소득분	일반①	6. 30.	1개월
				성실신고	6. 30.	-
		직접 피해 (확진환자발생·경유사업장 등)	종합소득분	일반	8. 31.	3개월
				성실신고	8. 31.	2개월
			양도소득분		법정기한+3개월	3개월
	신청	기타 피해	종합소득분	일반	최대 8. 31.	3개월內
				성실신고②	최대 10. 5.	3개월內
			양도소득분		법정기한+3개월	3개월內
납부기한	직권	全 납세자	종합소득분	일반	8. 31.	3개월
				성실신고	8. 31.	2개월

※ (종합소득분) 신고기한 연장이 납부기한 연장과 충돌할 경우 적용 요령

- 연장된 신고기한이 ①인 경우 → 신고기한은 ①, 납부기한은 8월 31일 적용
- 연장된 신고기한이 ②인 경우 →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모두 ②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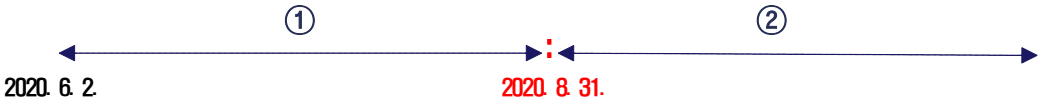

❑ 종합소득·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수영구청 세무1과(☎051-610-47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4. 23.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